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의무직렬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의무직렬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을 “지방의무직렬공무원 및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별표”를 “별표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지방의무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	전문의	일반의
2~3급	월1,010,000원	월1,010,000원
4급	월909,000원	월854,000원
5급	월909,000원	월818,000원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로 한다.

[별표2]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근무연수	가급	나급
5년 이상	월1,312,000원	월973,000원
4년 이상	월1,306,000원	월967,000원
3년 이상	월1,300,000원	월961,000원
2년 이상	월1,295,000원	월956,000원
2년 미만	월1,289,000원	월950,000원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 제1항 및 별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기준에 의거 가급은 전문의, 나급은 일반의를 말함.(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42
------	-----

2004년 9월 7일
교육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04.9.7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문화국장 권영규)

- 가. 개정이유
 -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에 대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안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시설관리 및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안 제4조)